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25

광 주 고 등 법 원

제주제1행정부

판 결

사 건	(제주)2023누18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 주식회사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이○
피고, 항소인	○○시장
	소송대리인 변호사 이○○
제1심 판결	제주지방법원 2023. 12. 12. 선고 2023구합5787 판결
변 론 종 결	2024. 5. 8.
판 결 선 고	2024. 6. 19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25

피고가 2022. 3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2,354,03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3쪽 4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"마. 위와 같은 J과 E의 합의에 따라, E은 2018. 12. 31.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00,0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.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잔금 100,000,000원을 지급하였고, 곧바로 E으로부터 500,000,000원을 지급받아 E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(D는 2011. 11. 17. 설립되었고,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)."

○ 제1심판결 3쪽 19행의 "갑 제1 내지 7호증"을 "갑 제1 내지 7, 9호증"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5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"즉, E, J, 원고의 순차적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같은 날 E에 이를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주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 체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25

결 당시의 목적과 정반대로 D를 자회사로 두지 않기 위함이었다.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,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.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전후의 사정 및 배경에 비추어 보면,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등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."

○ 제1심판결 5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"실제로 원고가 D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."

○ 제1심판결 6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"관련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주식은 주권 미발행 주식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 체결일인 2018. 8. 21.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8. 12. 31. 이 사건 주식을 E에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한다. 그러나 이 사건 제1계약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였는바, 이 사건 제1계약은 원고가 C의 이 사건 주식(D 발행주식 100%)을 취득하여 D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(제1조 제1항), 잔금 정산과 동시에 C이 원고에게 D의 법인 인감 및 법인 인감카드를 인도하여 원고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(제5조 제2항), C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19. 2. 7.에 이르러서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18. 12. 31.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"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25

하여 정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○○

판사 강○○

판사 강○○